

<별지 제3호 서식>

시민의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통보
(제14조제2항 관련)

1. 감사청구사항
 - 가. 청구인 : 대표자 :
 - 나. 청구일자 :
 - 다. 청구요지 :
2. 감사개요
 - 가. 감사기간 :
 - 나. 감사대상기관 :
 - 다. 감사반편성 :
 - 라. 감사방법 :
3. 감사결과
 - 가. 중점 감사사항(청구인의 주장사항 등)
 - 나.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
 - 다. 건의·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
 - 라.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종합의견
 - 마. 기타 특기사항

.....
서울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.....
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부시장”을 “행정(1)부시장”으로
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예산실장”으로
하고, 동조제3항중 “위원은 다음 각호의 1
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위원은 시장이 회의개
최시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로
동조동항제1호의 “시의 경제관련 실·국
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”으로 한
다.

제5조중 “상공과장”을 “산업정책과장”으로 한
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
정할 때 소집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.....
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64	2000. 5. 기획경제위원회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

1. 심 사 경 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
서울특별시 시장 제
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
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(2000년 4월 24일 상정, 의결)
2. 제안설명의 요지
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임재오)
 - 가. 제안이유
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
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
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

금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('99.9.7)되어 시행(2000.3.1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·재단법인의 명칭 및 그 설립근거를 변경함(안 제명 및 제1조)
 - 조례명 변경 :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→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
 - 명칭변경 :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 → 서울신용보증재단
 - 설립근거변경 : 민법 제32조 →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
- 재단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3조)
-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정함(안 제4조)
 - 시·금융기관·기업·기타기관 등의 출연금 및 정부보조금
- 기금의 용도를 정함(안 제6조)
 - 소기업 등 신용보증에 대한 금전채무 변제비용 및 재단관리·운영비용
-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- 재단이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,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재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(안 제8조)
 - 재단의 업무
 - 기본재산의 관리 및 신용보증
 -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
 - 경영지도 및 구상권의 행사
 -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
- 재단의 해산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파견의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3조 및 제16조)

재단이 조합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세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.(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·령, 별첨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.
- 기타
 - (1) 입법예고결과(2000.2.17~2000.3.11), 별첨
 - (2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, 중요 규제사무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약

(전문위원 : 김동수)

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'99.3.20 제정, 운영되어 왔으나, '99.9.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, 시행(2000.3.1)됨에 따라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으로 설립근거 및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며
-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융자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조문별 주요제정 내용

- 안 제명 및 제1조 「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」와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으로의 조례명 및 명칭변경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변경에 따른 것이며
- 안 제3조 지점설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(본점 및 지점 등) 제2항의 근거로 재단의 업무가 확대될 경우 안 제6조 재단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구역안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
- 안 제9조 및 제10조 재단이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,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1항, 제2항을 근거로 마련한 것이며
- 안 제8조(업무) 제2항 재단의 업무를 규

정하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(업무)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

□종합의견

○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'99년 7월 15일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를 개시할 때의 목적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, 영상·패션·소프트웨어 관련기업, 첨단고부가가치산업인 서울형산업 등에게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력 측정자료가 미흡하여 현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상 지원을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채무를 보증·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여 왔으며

○금번 조례개정으로 서울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다만, '99년 말 현재 신용보증계획은 1000억원(1,700건수)으로 계획대비 보증실적비율은 약 32%인 337억 5,600만원(405건수), 2000년 신용보증계획은 1,300억원(1,500건수)으로 2000년 4월 11일 현재 계획대비 보증실적비율 약 17%인 235억 8,500만원(355건수)으로 저조한 신용보증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, 아울러 대출기준과 지원조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보다 많은 업체들이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0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65
----------	-----

2000. 5.
기획경제위원회

- 1. 심사경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4월 24일 상정, 의결)

-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임재오)

가. 제안이유
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용도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을 추가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- 나. 주요골자
 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범위에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추가함.(안 제4조)
 - ※중소기업지원시설 : 중소기업의 창업보육, 시제품·기술·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·운영하는 서울창업보육센터, 서울애니메이션센터, 서울벤처타운 등의 시설
 - 운전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를 추가함.(안 제8조)
 - 시설자금의 용자대상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, 유통업·건설업·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추가함.(안 제12조)

- 다. 참고사항
 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③(생략)